

일반회계 독촉장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

일자리안정자금환수금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수취인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1.

성 남 고 용 노 동 지 청 장



1. 건 명 : 일자리안정자금환수금 독촉장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33조의 3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9. 1. ~ 2026. 9. 15.(15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고용관리과(5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고용관리과 조은경(Tel 031-788-15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